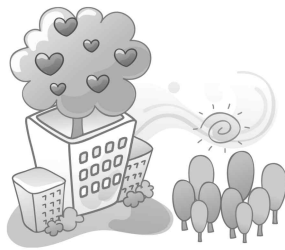


9

방위산업청



[방위산업청 총괄표]

부처명	사업명	지원분야	연구수행 주체	지원목적	개발단계	연구개발 기간 (개월)	'13년 정부 투자규모 (억원)	'13년 과제당 평균지원 규모 (백만원)	'13년 신규 과제 공고 예정일	페이지
방위 사업청	기초연구	기타 (국방과학기술)	학교, 정부출연 연구소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보	기초연구	36~72	97.20	80	2~4월	832
방위 사업청	특화연구센터	기타 (국방과학기술)	학교, 정부출연 연구소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보	기초연구	72~108	270	1,500	2~5월	836
방위 사업청	핵심기술	기타 (국방연구 개발사업)	국방과학 연구소, 산업체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중소벤처기업 (연구소)	기타(선진 외국에서 기술이전이나 판매를 기피하는 주요 핵심기술 개발)	응용연구, 시험개발	36~48	2,720.29	2,108	-	840
방위 사업청	신개념기술 시범사업	기타 (국방 신개념 기술)	산업체, 학교, 연구소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무기체계로 신속 획득	연구개발	36~48	99.51	498	-	845
방위 사업청	민·군겸용기술사업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환경, 기타	연구소, 기업 등	산업기술개발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24~72	528.56	835	2월	849
소계	5개 사업									

기 초 연 구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이희진 주무관

(전화 : 02-2079-6386, E-mail : lhj01@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타(국방과학기술)
(2) 연구수행주체	학교, 정부출현연구소
(3) 지원목적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보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5) 연구개발기간	36 ~ 72개월 이내
(6) '1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97.20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0백만원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 국방 기초연구 활성화와 연구인력 양성 등 저변확대를 통해 미래 무기체계 독자개발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보

지원방향

- 국방 8대 기술분야 중심의 과제를 선정하여, 핵심기술·부품연구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활동 수행

2.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
- 기타(국방과학기술)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학교, 정부출연연구소
- 신청자격
 - 제한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개별기초연구 연간 약 10,000백만원, 과제당 250백만원
 - 지원방식 : 정부 출연
 - 지원기간 : 36개월 이내이나, 필요시 72개월 가능
- 지원조건 : 공개경쟁입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방위사업청 : 지침 수립, 예산 확보/지원, 사업추진

- 국방과학연구소 : 과제 공모
- 국방기술품질원 : 제안서 평가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월	실행내용	월별 End-Product
1	▪ 신규 과제 제안요청서 검토	▪
2~4	▪ 신규 선정 및 제안서 공고	▪ 신규 27개
3월말	▪ 개별기초연구 제안서 설명회	
5	▪ 제안서 평가실시	▪ 신규
6~7	▪ 연구계획서 승인 및 사업착수	▪ 신규
9~11	▪ 계속과제 성과평가 실시	▪ 기존 63개
12	▪ '14년 제안서 공모 지침 계획	▪ 신규

7. 제출서류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제안요청서, 연구계획서(연구업적 등 포함)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방위사업법 (제18조)
- 방위사업관리규정(제172조)
-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예규

기타서류

- 신청요강(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 www.add.re.kr)

—〈문 의 처〉—

- 정 부 :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이희진 주무관
(Tel : 02-2079-6386)
- 전문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계획실 변수정 선임연구원
(Tel : 042-821-3052, E-mail : sjbyun@add.re.kr)

특화연구센터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이희진 주무관

(전화 : 02-2079-6386)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타(국방과학기술)
(2) 연구수행주체	학교, 정부출현연구소
(3) 지원목적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에 필요한 기반기술 확보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5) 연구개발기간	72 ~ 108개월 이내
(6) '12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70.00억원
(7) '12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1,500백만원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 국방 과학기술 분야의 선도적 연구집단을 발굴·육성하여 미래 첨단 무기체계의 독자개발에 필요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지원방향

- 대학 및 연구소에 국방 특화연구센터를 지정하여 특정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6~9년 동안 장기 지원
- 개별과제 형태로 수행하던 국방 기초연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관련기술을 협력하여 집중연구 할 수 있는 공동 협력연구사업 모델을 구축, 연구 성과의 극대화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 수행

2.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
- 기타(국방과학기술)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학교, 정부출연연구소
- 신청자격
 - 제한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특화연구센터 연간 약 25,000백만원, 센터당 약 13,000백만원
 - 지원방식 : 정부 출연
 - 지원기간 : 72개월 ~108개월
- 지원조건 : 공개경쟁입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방위사업청 : 지침 수립, 예산 확보/지원, 사업추진

- 국방과학연구소 : 과제 공모
- 국방기술품질원 : 제안서 평가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월	실행내용	월별 End-Product
1	▪ 신규 특화연구센터 제안요청서 검토회의	▪
2~5	▪ 신규 선정 및 제안서 공고	▪ 신규1~2개
4	▪ 제안서 설명회	
7	▪ 제안서 평가실시	▪ 신규
8	▪ 종합심의회 및 정책기획분과위	
9	▪ 연구계획서 승인 및 사업착수	▪ 신규
10~11	▪ 계속과제 성과평가 실시	▪ 기존 13개
12	▪ '14년 제안서 공모 지침 계획	▪ 신규

7. 제출서류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제안요청서, 연구계획서(연구업적 등 포함)
- 선정 이후 사후관리 : 결과보고서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방위사업법 (제18조)
- 방위사업관리규정(제172조)
-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예규

기타서류

- 신청요강(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 www.add.re.kr)

—〈문 의 처〉—

- 정 부 :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이희진 주무관
(Tel : 02-2079-6386)
- 전문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계획실 변수정 선임연구원
(Tel : 042-821-3052, E-mail : sjbyun@add.re.kr)

핵심기술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이성진 중령

(전화 : 02-2079-6384, E-mail : navsealsj@korea..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타(국방연구개발사업)
(2) 연구수행주체	국방과학연구소, 산업체(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중소벤처기업(연구소)
(3) 지원목적	기타(선진 외국에서 기술이전이나 판매를 기피하는 주요 핵심기술 개발)
(4)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시험개발
(5) 연구개발기간	단계별 36개월 ~ 48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2,720.29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2,108백만원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 미래 핵심전력 무기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 첨단기술 및 부품을 개발하거나, 선진 외국에서 기술이전이나 판매를 기피하는 주요 핵심기술 및 부품을 개발

필요성 및 운용개념

- 선진국이 해외이전을 기피하는 전략기술의 국내 독자개발을 통한 기술 자립 기반구축

- 국산 무기체계 소요 핵심기술의 국내개발을 통해 군이 요구하는 성능의 무기체계를 경제적 비용으로 획득
- 미래 군의 소요제기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소요 핵심기술을 사전확보 함으로써 향후 연구개발 무기체계 비중의 점진적 확대

2.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
 - 기타(국방과학기술)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산업체(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중소벤처기업(연구소)
- 신청자격
 - 제한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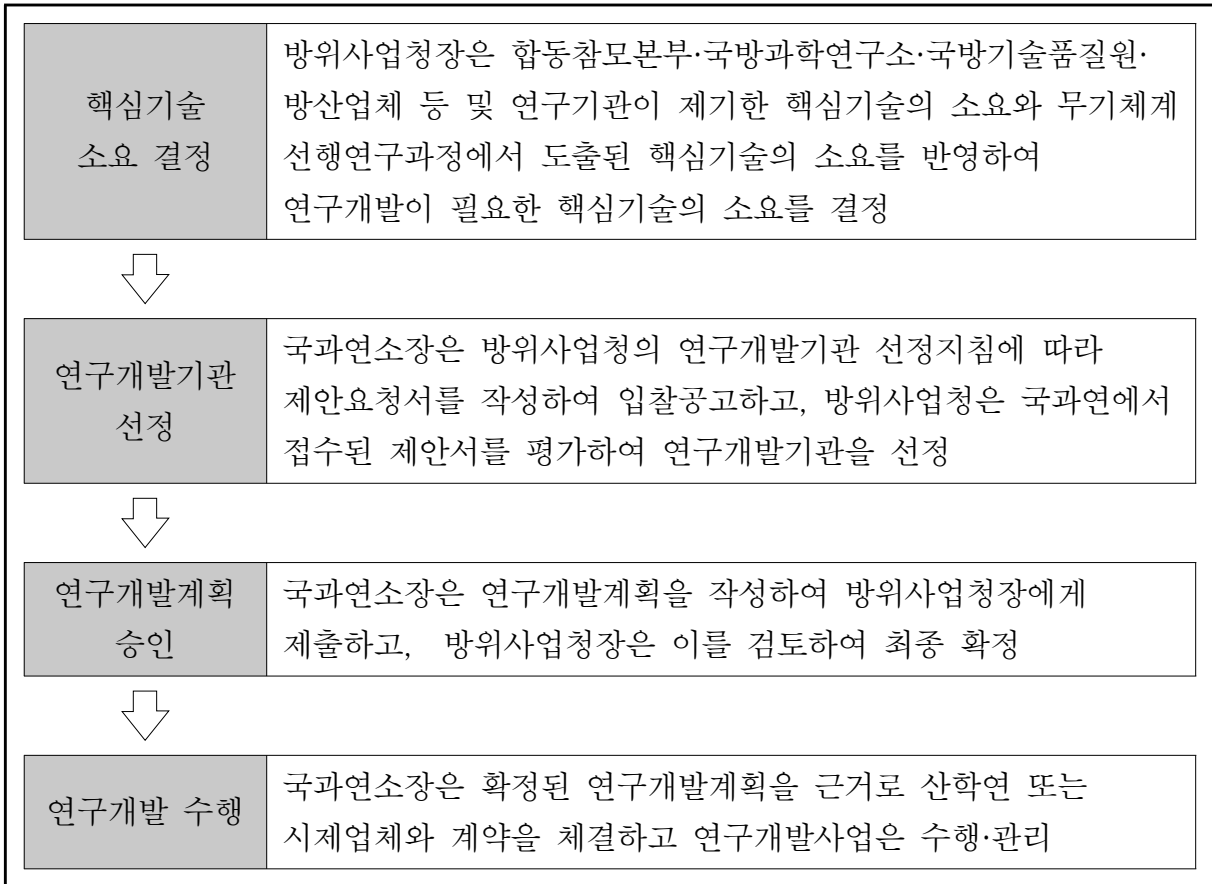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약 3,000억원
 - 지원방식 : 정부 출연
 - 지원기간 : 48개월 이내
- 지원조건 : 공개경쟁입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방위사업청 : 과제선정, 예산 편성 요구·수립, 사업 조정통제
- 국과연, 산업체 : 과제수행
- 기품원 : 과제공모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 1~4. : 핵심기술 과제 제안서 공모
 - 4~6. : 핵심기술 과제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6~8. : 신규 착수 핵심기술과제 사업 승인
 - 6~9. : 신규 착수 핵심기술과제 계약 및 사업추진
 - 12 : 핵심기술과제 성과평가(단계평가) / 과제종결

7. 제출서류

- 과제별
 - ① 과제제안서
 - ②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8. 관련자료

- 관련규정
 - 방위사업법 (제18조)
 - 방위사업관리규정
 -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문 의 처〉—

- 정 부 :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이성진 중령
(Tel : 02-2079-6384, E-mail : navsealsj@korea.kr)
- 전문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계획실 김준연 선임연구원
(Tel : 042-821-3089)

신개념기술시범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방위사업청	획득기반과	김용태 주무관

(전화 : 02-2079-6326, E-mail : kyt04@korea.co.kr)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기타(국방 신개념기술)
(2) 연구수행주체	산업체, 학교, 연구소
(3) 지원목적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무기체계로 신속 획득
(4) 연구개발단계	연구개발
(5) 연구개발기간	3 ~ 4년 이내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99.51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498백만원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 이미 성숙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작전운용능력을 갖는 무기체계 또는 핵심 구성품을 군사적 실용성평가를 통하여 3년 또는 4년 이내의 단기간에 입증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합동 요구능력을 갖는 긴요전력으로 신속히 전력화

지원방향

-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군에 신속히 적용할수 있는 제도로 전액 정부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연구개발
- 기타(국방 신개념기술)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산업체, 학교, 연구소
- 신청자격
 - 제한 없음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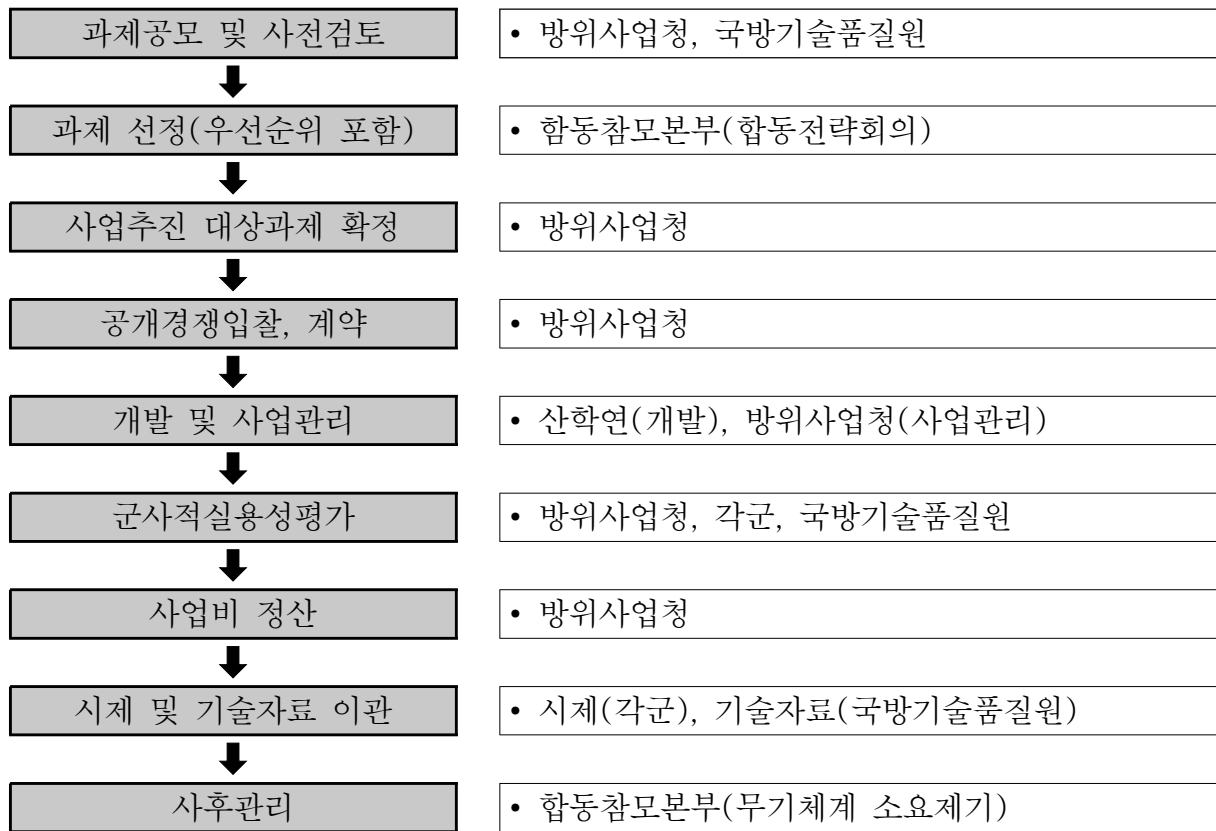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약 100억원
 - 지원방식 : 전액 정부 투자
 - 지원기간 : 48개월 이내
- 지원조건 : 공개경쟁입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방위사업청 : 과제공모 및 사전검토, 예산 확보/지원,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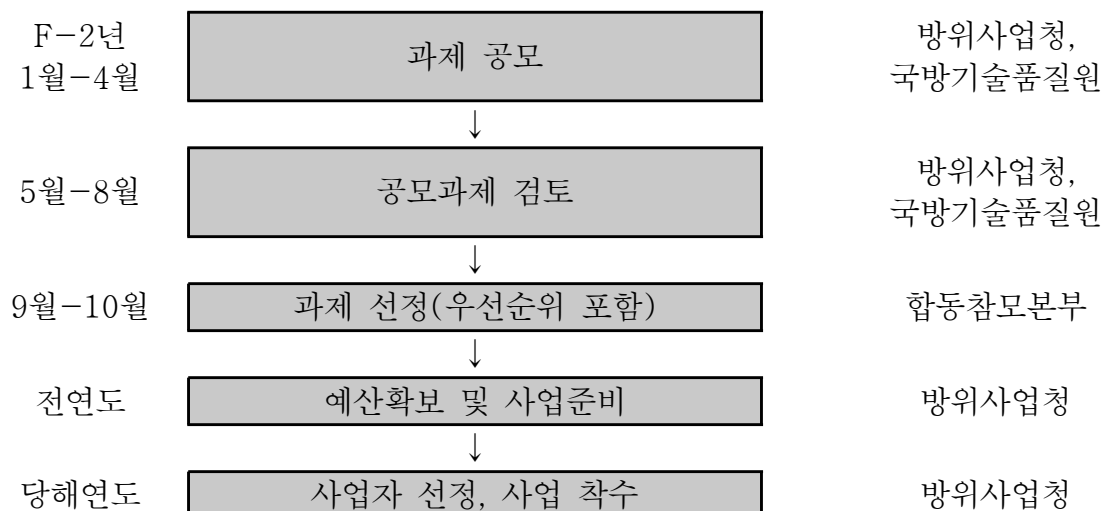
○ 합동참모본부 : 과제 선정(우선순위 포함)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월별 추진일정



7. 제출서류

과제별

- ① 과제요청서
- ② 사업계획서안
- ③ 자체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
- ④ 결과보고서, 기술자료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방위사업법 (제18조)
- 방위사업관리규정(제194조 내지 제208조)
- 신개념기술시범사업 업무관리 예규

기타서류

- 신청요강(국방과학기술품질원 홈페이지, www.dtaq.re.kr)

—〈문 의 처〉—

- 정 부 : 국방부 방위사업청 획득기반과 김용태 주무관
(Tel : 02-2079-6326)
- 전문기관 : 국방과학기술품질원 기반체계전력팀 박종남 선임연구원
(Tel : 02-2079-1426, E-mail : actd@dtaq.re.kr)

민·군겸용기술사업

부 처	담당부서	담당자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류재형 사무관

(전화 : 02-2079-6339, E-mail : ryujh01@dapa.mil)

구 분	분류내용
(1) 지원분야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환경, 기타
(2) 연구수행주체	연구소, 기업 등
(3) 지원목적	산업기술개발
(4)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5) 연구개발기간	24개월 ~ 72개월
(6) '13년 정부투자규모(억원)	528.56억원
(7) '13년 과제별 평균지원 금액(백만원)	835백만원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 군수 및 민수 분야의 연구개발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안보 역량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제고
- 민·군간 중복투자 예방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연구개발비를 절감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 제고

사업목표

- R&D투자 효율성 제고 및 안보역량 강화

- 민군의 개방 융합형 R&D 시스템 구축을 통한 방위산업의 성장 및 수출 전략화

□ 지원방향

- 국방력·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군 양부문에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 정부 국정과제 120-4(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창조형 R&D 추진 및 방위산업 활성화) 및 부처협업과제 83(민군기술협력 및 방산 수출지원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한 무인·로봇·센서 분야 우선 채택 예정

2.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개발

- 기술개발(Spin-up)
 - 시장규모, 경제성, 파급효과가 큰 기술
 -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기술
- 기술이전(Spin-On, Off)
 - 민수→군수 기술이전(Spin-On), 군수→민수 기술이전(Spin-Off)
 - 실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4.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 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금 현금 비율 한도가 정해짐
- 선정방식 :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
 - 주관기관 선정공고 ⇒ R&D 과제신청 ⇒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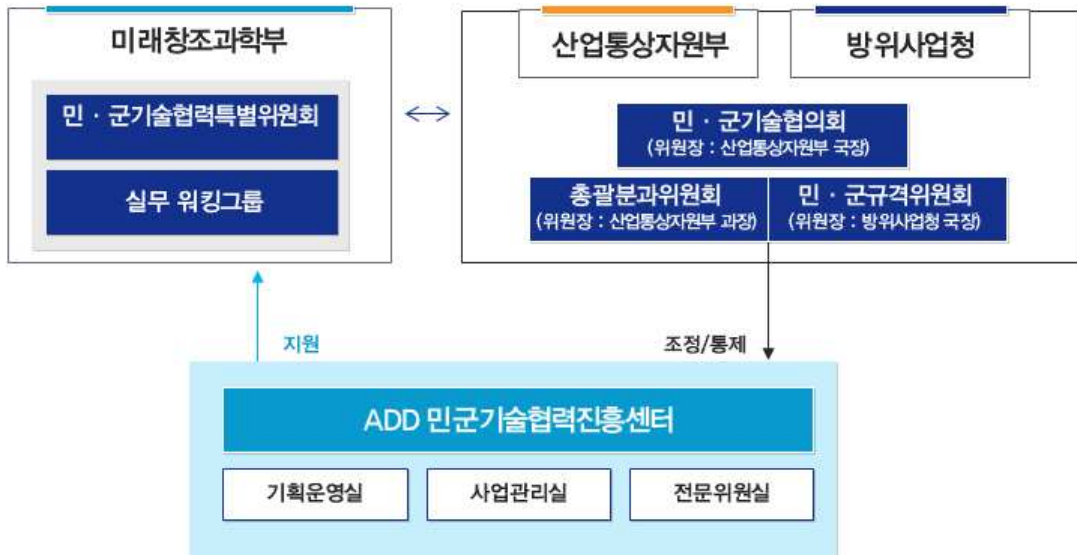
□ 지원조건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한도가 아래와 같이 정해짐

참여 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총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기업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대기업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2개	중소기업, 중소기업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그 외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3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75%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중소)기업 2/3 이상	6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그 외	50%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업무추진체계	수행주체	수행 내역
과제기획	기술교류회 평가위원회 민군센터	기술수요조사, 기술교류회 등
		민·군 소요성 평가
		상세 과제기획 및 RFP 작성
지원과제선정	산업부/방사청 민군기술협의회 민군센터	당해년도 시행계획 수립
		예산안 및 지원과제 확정·공고
주관기관선정	산업부/방사청 민군센터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부처 집행승인 및 협약
진도관리·평가	민군센터	진도·단계·최종 평가
연구비 정산	민군센터	연구비 정산
기술실시계약	민군센터	기술실시계약(기술료)
기술료 징수	민군센터	기술료 징수
사후 관리	민군센터	실용화 결과 보고

6. 추진일정

월별 추진일정

월	실행내용	월별 End-Product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분과위원회·민군기술협의회 시행계획 의결 ▪ 특허기술동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계획 ▪ 특허기술동향조사 보고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선정 공고 및 RFP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문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선정 평가 및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서
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기획(부처 공동기획, 기술교류회, 기술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제안서, 계획서
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군소요성평가, 중복성검토 ▪ RFP 작성 및 과제기획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군소요성평가서, 중복성검토결과서 ▪ RFP, 기획연구보고서

7. 제출서류

과제별

- 연구계획 신청 및 선정 : 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 협약 : 연구개발계획서, 과제계획서, 협동/위탁연구협약서, 연도별 연구비 산정 및 집행계획서, 현물출자 확약서 등
- 평가 : 진도보고서, 최종평가용 약식보고서, 기술개발성과 확약서 등
- 정산 : 연구비 사용 총괄 현황표 등
- 기술실시계약 : 기술료 납부 계획서,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등

8. 관련자료

관련규정

-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기타

-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 홈페이지, <https://www.cmtc.re.kr>

— <문 의 처> —

- 정 부 :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류재형 사무관
(Tel : 02-2079-6339, E-mail : ryujh01@dapa.mil)
- 전문기관 :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 기획운영실 이영중 선임연구원
(Tel : 042-821-2866, E-mail : youngcenter@add.re.kr)